

창원지방법원 2020. 10. 22 선고 2019나511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종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기한, 문충식, 정인석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최종원

피고, 항소인1. B

2. C

변론 종결2020. 9. 17.

판결 선고2020. 10. 22.

환송전_

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. 6. 9. 선고 2015가단10352 판결

환송판결창원지방법원 2018. 8. 3. 선고 2017나3219 판결

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. 11. 13. 선고 2018가단6965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60/302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. 2. 14. 접수 제70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목록 제4, 5,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. 9. 17. 접수 제583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 C는 같은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. 7. 14. 접수 제458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비용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,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'2. 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이 사건 정기총회와 관련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

피고들은, 원고의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참석한 종중원은 59명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은 255명인데, 위임장에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위임장에 의한 결의는 무효이고, 원고의 종중원 중 최고령자인 AF의 위임에 따라 E의 주재로 종중원 73명이 별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G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, W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원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M를 대표자로 선출하면서

M가 수행한 이 사건 소1)에 관한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에서 대표권 흠결의 하자 및 소제기를 위한 총회결의 흠결의 하자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위와 같이 하자가 치유된 이 사건 소가 2018. 2. 25.에 있었던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.

아울러 이 사건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살피건대,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M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갑 제12, 1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M의 주재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출석 종중원 59명 중 41명, 위임장 제출 종중원 255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W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AF의 위임에 따라 E 등 종중원 73명이 같은 날 별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AG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위 AF이나 E이 정기총회를 개최하거나 주재할 권한이 없으므로,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정기총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 사건 정기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.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호성호

판사김민정

판사최진숙

별지

1) 이 사건 소는 2015. 10. 26. 제기되었고(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10352호), 위 법원은 2017. 6. 9.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(창원지방법원 2017나3219호) 중이던 2017. 11. 19.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는 M를 대표자로 선임하면서 M가 수행한 종전 소송행위를

추인하였다.